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국회동의 제도 도입〉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85호)

〈방산물자 필요적 수출 금지 신설〉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4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현행 방산물자 수출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4
2.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국회동의 제도 도입(김병주의원안)	9
3. 방산물자 필요적 수출 금지 신설(김준형의원안)	13
※ 참고자료	
1. 현행 수출허가 절차 및 각 기관별 역할	19
2. 방산물자 수출 관련 「방위사업법」 등 규정	20
3. 국회 동의권 관련 헌법 조항 및 유사 입법례	24

I. 제안경위

발 의 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발의연월일	2024. 8. 28.	2024. 9. 23.
회부연월일	2024. 8. 29.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병주의원안]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김준형의원안]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 「대외무역법」 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현행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건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김병주의원안은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준형의원안은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방산물자의 수출을 필요적으로 금지’하는 것임. 이하에서는 현행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2건의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임.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¹⁾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산물자 또는 무기체계 수출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에서는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

1)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 관련 방위사업법 등 규정]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⑥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 이와 같이 방산물자 수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겨져 있어 방산물자 등의 수출로 인해 수출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³⁾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⁴⁾ 및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⁵⁾ 등을 준수하여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및 외교적 마찰 여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방산물자 등의 수출 절차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3) 참고자료: 1. 방산물자 수출허가 절차 및 기관의 역할

4) 참고자료: 2. 방산물자 수출 관련 「방위사업법」 등 규정

5)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은 재래식 무기가 테러, 민간인 학살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간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조약에 따라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되고, 무기 수출에 관한 내용을 UN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2개국이 2013년 6월 UN 총회에서 서명하였다.(시사상식사전)

□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사후적인 의회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미국과 달리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전쟁무기 지원 등의 구체적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려는 무기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식으로 견제하고 있음.⁶⁾

6) 국회입법조사처,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해외 입법례의 비교”, 입법조사회답

[무기수출 관련 의회 통제 해외 사례 비교]

국가	의회 통제 내용																
미국	○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서 의회에의 보고와 심의, 의회의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22 U.S.C.A. § 2776) ⁷⁾																
	<table><tr><th>대상국가</th><th>장비별</th><th>금액별</th><th>심의 기한</th></tr><tr><td rowspan="2">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td><td>중요국방장비</td><td>2,500만불 이상</td><td rowspan="2">15일</td></tr><tr><td>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td><td>1억불 이상</td></tr><tr><td rowspan="2">NATO 비회원국</td><td>중요국방장비</td><td>1,400만불 이상</td><td rowspan="2">30일</td></tr><tr><td>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td><td>5,000만불 이상</td></tr></table>	대상국가	장비별	금액별	심의 기한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중요국방장비	2,500만불 이상	15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1억불 이상	NATO 비회원국	중요국방장비	1,400만불 이상	30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5,000만불 이상
	대상국가	장비별	금액별	심의 기한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중요국방장비	2,500만불 이상	15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1억불 이상														
NATO 비회원국	중요국방장비	1,400만불 이상	30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5,000만불 이상															
	○ 의회가 대통령이 통보한 무기 판매를 비승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행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음																
영국	○ 전쟁무기의 대외 이전에 관하여 국무장관의 의회에의 보고 규정이 있음(「2002년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2002)」)																
	○ 2021년 12월 8일 영국 내각은 「전략적 수출을 위한 허가 기준(licensing criteria for strategic exports)」을 개정하였는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국의 국제 관계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가 아니어도 내각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독일	○ 전쟁무기의 대외 이전에 관한 의회의 역할(의회에의 보고, 의회의 심의, 의회의 거부권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제4조의a에는 전쟁무기의 대외 이전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전 건에 대해 특별히 의회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일본	○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 2014년 각의결정의 구체적인 운용방향에 대해 의회에서는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각을 감독하고 있음																
	○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 하였는데, 현재 3원칙의 운용 지침의 재검토를 위해 2023년 5월 10일 자민, 공명 양당의 실무자 협의의 제2차 화합이 의회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2.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국회동의 제도 도입(김병주의원안)

-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⁸⁾의 수출을 허가 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는 수출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6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김병주의원안)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도</u>

7) 자세한 사항은 이 보고서의 각주 12 참조

8)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②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법 제35조 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현행	개정안(김병주의원안)
<신설>	<u>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2. <u>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u> ⑦ <u>국회는 제6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u>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⁹⁾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분쟁이 발생
 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주요방산물자

9) 참고자료: 3. 국회 동의권 관련 헌법 조항 및 유사 입법례

수출뿐만 아니라, 주요방산물자의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도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국제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한 입법부의 사전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와는 별개로 주요방산물자 수출의 적정성을 이중으로 심사함으로써 행정부 단독의 결정에서 오는 정책적 오류 위험성을 차단하고 헌법상의 국제평화 유지의무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방산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등에 수출하거나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¹⁰⁾ 등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 무기수출 허가제도의 긴밀성과 적시성 그리고 국제무기 거래의 신뢰성 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주요방산물자의 해외 수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방산물자의

10) 해외 파병국가 등 현황 ('24. 11. 12. 현재, 자료: 국방부)

구분	동명 부대	한빛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지 역	레바논	남수단	아덴·오만만	UAE

수출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적합한지 문제와 함께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규정과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규정의 국제 평화 유지의무의 실효적 이행 문제, 주요방산물자 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문제, 국가와 금액에 차등하여 의회 통제 체도를 운영하는 미국 입법례¹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방산물자 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서의 국회의 동의 대상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 등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평상시’ 주요방산물자 수출의 경우도

11)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상 무기수출 의회 심의 필요 금액 및 처리기한

대상국가	장비별	금액별	심의기한
NATO 회원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한국	중요국방장비	2,500만불 이상	15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1억불 이상	
NATO 비회원국	중요국방장비	1,400만불 이상	30일
	기타 국방물자, 훈련, 용역	5,000만불 이상	

- 중요국방장비(MDE : Major Defense Equipment) : 무기수출통제법(AECA) 제47조 제6항에 따라, 美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tion List) 상의 주요군사장비(SME :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중 5천만불 이상의 독자적 연구개발비 또는 2억불 이상의 총 생산비가 드는 장비

- 주요군사장비(SME :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 군사적 유용성 또는 성능이 높아서 특별한 수출통제가 필요한 품목

○ 미국 정부가 의회 제출 인증서(Certification)에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해당판매가 필요한 비상상황(Emergency)이 존재한다고 명시한 경우 의회 승인 예외

- 의회승인 예외의 경우 의회제출 인증서(certification)에 ① 즉각적인 수출허가 발급 필요 비상상황에 대한 설명 ② 관련 국가안보이익에 대한 논의 포함 필요

포함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주요무기 수출입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30일의 처리기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나열하여 명시하고 있고, 방산수출의 국가간 경쟁 구도 등을 고려할 때 수출허가 절차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 수출허가는 국제관계·외교상황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전 국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의하는 입장임.

외교부도 「대한민국헌법」 제60조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국회의 동의권 적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의하는 입장임.

3. 방산물자 필요적 수출 금지 신설(김준형의원안)

- 개정안은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거나 수출 대상 국가가 국제법규 등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신설).

또한 동 신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4항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김준형의원안)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③ (생략)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1.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사변이 있을 경우
<신설>	2.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김준형의원안)
제62조(벌칙) ① ~ ③ (생략)	제6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 또는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앞서 보았듯이 현행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 제도에 따르더라도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제한 조치는 「방위사업법」이 아닌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 여부가 방위사업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¹²⁾

방산물자 등의 수출로 인하여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행정청의 재량에

12) 앞의 「방위사업법」 제57조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참조

다른 정책적 오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률에서 직접 전쟁 등의 경우 수출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익에 중요한 사항인 무기 수출 등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국제평화 유지 의무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7조제4항제1호에서는 수출 제한 사유로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호관계, 적대관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 국가 등에 대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필요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6항의 범문언상 방위사업 청장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쟁 중인 경우라도 우호관계 등의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 또한, 개정안 제57조제4항제1호에서 전쟁 등의 국가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인지 그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여전히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그리고 안 제57조제4항제2호에서는 수출 제한 등의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필요적 방산물자 수출 제한 등의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현행 수출허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개정안과 유사한 항목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수출허가는 수출품목 또는 급변하는 외교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유사 법률¹³⁾과 같이 수출허가 판단은 '재량' 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 제62조제4항에서는 제57조제4항의 수출의 제한, 금지 조치 및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한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

13)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중략)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그러나 법 제57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벌칙과 신설 벌칙은 유사행위 위반자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벌칙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제62조제4항(수출 제한명령 위반)의 법정형을 현행 제62조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무부는 개정안 제62조제4항은 개정안 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 또는 조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벌의 전제가 되는 안 제57조제4항 중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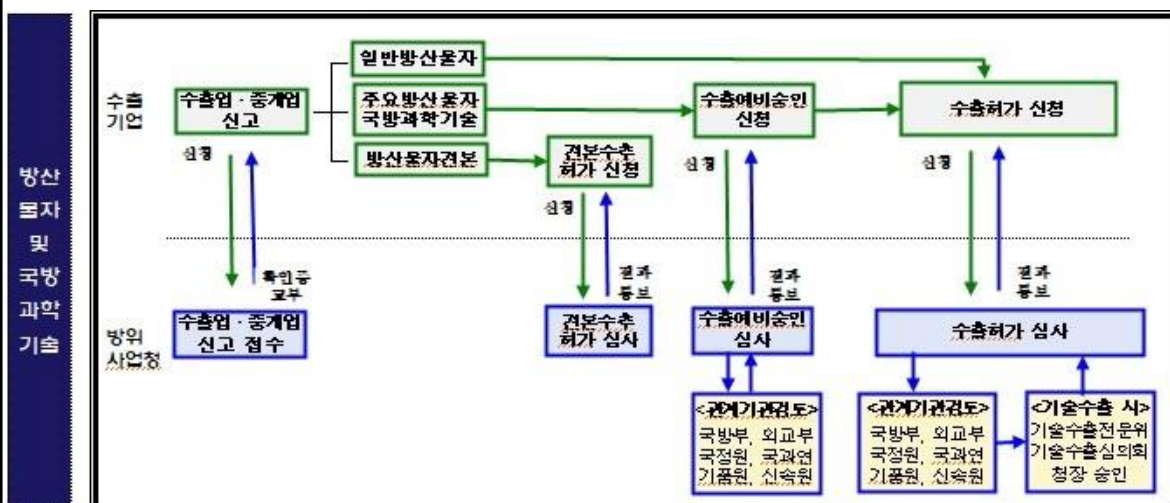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현행 수출허가 절차 및 각 기관별 역할**

- 관련근거: 방위사업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19조, 무기거래조약(ATT) 등
- 심사절차: 수출허가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등 종류에 따라 각 절차 상이
- 심사기관: 수출허가기관은 ‘방위사업청’이며,
협조기관으로는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있음
- 중점검토: 국제평화·안전유지·국가안보·외교적 마찰 발생 여부 등

*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부서)	협조내용
국방부	·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해외거래 업체의 정보(거래자 적격 여부, 제3국 이전 가능성 등) · 수출통제 정책적 측면 및 주변국 정세 및 대북관계 측면 ·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외교부	· 외교적 관점에서 수출 타당성(수출 시 외교적 파급효과 등)
국정원	· 해외거래 업체의 정보(거래자 적격 여부, 제3국 이전 가능성 등)
국과연 및 기품원	· 기술소유권, 기술유출 및 보호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 이중용도 품목의 군사적 목적 사용

* 절차 도해



2. 방산물자 수출 관련 「방위사업법」 등 규정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0.>

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③ 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

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6. 20.>

④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2.>

⑥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5. 9. 22., 2020. 3. 31., 2021. 3. 30.>

1.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⑦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9. 22., 2017. 6. 20., 2020. 3. 31.>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 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본조신설 2024. 2. 20.]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

단인 미사일 및 채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2. 20.]

3. 국회 동의권 관련 헌법 조항 및 유사 입법례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9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9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제연합 평화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3.>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2. 3.>